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도전*

The Challenge of Personal Information Act for Oral History Project

이 호 신 (Hosin Lee)**

목 차

- | | |
|--------------------|---------|
| 1. 여는 말 | 4. 대응방안 |
|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 5. 닫는 말 |
| 3. 구술자료와 개인정보 | |

<초 록>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과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주제어: 구술사, 구술자료,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issues relat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recently emerging in the field of oral history, and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oral history academics and archives.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is intended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the constitutional privacy, and to assu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thereby realizing the dignity and value of the individual. Oral history is intended for living persons; therefore, strict ethical standards are needed to protect the morality of the person behind the sound recordings and appears as the subject of oral history. However, if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is made, it is a requirement to make the process of consenting and notifying excessively complex and almost impossible to realize, making collection and service of oral history resource improbable. The mechanical and strict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does not come into being because it has the aspect of undermining the inherent intrinsic value of oral history resources and making it difficult to maintain the authenticity of the record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58 (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of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ethical standards of oral history itself, especially for the protection of the moral rights of third parties.

Keywords: oral history, oral history resour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Act

*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조교수(leehs@hansung.ac.kr)

■ 접수일: 2017년 1월 26일 ■ 최종심사일: 2017년 1월 31일 ■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17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1), 193-216, 2017. <<http://dx.doi.org/10.14404/JKSARM.2017.17.1.193>>

1. 여는 말

국가기관의 공공사업으로서 구술사 연구와 구술자료 수집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 2003년 국사편찬위원회가 구술사 사업을 본격화한 이래로 구술사 연구와 아카이브즈는 괄목하게 성장하였다. 자료 수집에만 급급하던 초기와는 달리 다양하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구술자료가 서비스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일 것이다. 구술사 사업은 개인의 기억을 사회와 집단의 기억과 기록으로 제작·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조금씩 그 영역을 확장시켜 왔다. 초기의 구술아카이브즈들은 수집된 자료를 녹취문으로 제작하고 기관 내 열람실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데 머물렀다. 구술자료의 수집이 점차 다양한 기관으로 확산되면서 구술자료는 자료집 형식의 단행본으로 제작·발간되기 시작하였고,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전시회를 기획하거나 영상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면서 사회적 공유를 위한 공간과 형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구술자료 자체를 이용자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에 탑재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국가기록보존소는 구술사 동영상을 유튜브에 탑재해서 아무런 장벽이나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구술자료의 서비스와 활용이 본격적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구술사학과와 구술아카이브즈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법적 이슈들이 바로 그것이다. 구술자료에는 개인의 내밀한 삶의 체험과 인생에 대한 소회가 담겨 있기(이호신, 2012, p. 48) 때문에, 서비스와 활용에 앞서서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구술사의 특성에서 비롯된 자료 수집과정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남신동, 2003; 오유석, 2010; 이양호, 2010; 이희영, 2010)를 비롯하여, 구술자료의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저작권 문제(이호신, 2010), 구술 주체와 객체의 인격권 보호(이호신, 2012) 등은 구술사 연구의 초창기부터 꾸준히 제기된 이슈들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438호)의 시행에 따른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s)의 심의¹⁾와 구술자료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의 적용²⁾과 같은 새로운 이슈들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 프로세스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구술사에 대한 IRB의 사전 심의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는 Christian Joon Park(2016)이 미국 구술사학회의 동일한 사안에 대한 대응 사례를 고찰하면서 연구의 물줄기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

1) 한국구술사학회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술사와 연구윤리: IRB와 질적 연구의 도전>을 주제로 2016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 한국구술사네트워크는 2016년 워크숍을 <구술자료의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IRB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보법과 관련된 이슈는 아직까지 그 위협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술사학과와 아카이브즈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아직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아울러 구술사학과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개인정보법의 주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법의 규정들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영향과 문제점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법의 도전에 대응하여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2.1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법제1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별해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1994년 제정)’에 따라서, 민간 부문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9년 제정)’에 따라 규율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정보사회가 발달하면서 점차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되면서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으로 지금의 개인정보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법’이 마련된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불가침의 권리를 의미하며,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불가침의 권리를 뜻한다. 이렇듯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적인 원리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일종의 재화로서 개인정보의 다양한 처리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프라이버시의 보호만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원리를 설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보호에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공개를 허락하고, 타인의 경제활동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다(헌재 2005.5.26. 99헌마513).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권리 개념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원리를 새롭게 설명하는 독자적인 기본권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 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파악(헌재, 2005.5.26. 선고, 99헌마513결정)하여 권리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5.26. 선고 2004헌마190).”

개인정보는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초로 하여 보호가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개인정보 역시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타인과 사회적

인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은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및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측면도 함께 존재(장주봉, 2012)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2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한 파악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영어로는 personal data와 personal information이 모두 개인정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는 주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후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이창범, 2012, pp. 14-15). 그렇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꽤 오랜 연륜을 가진 유럽 국가들에서도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정의는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개인정보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가능성을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다. 성명, 초상,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과 같이 직접 개인을 식별하는 데 쓰이는 정보는 물론이고,

인터넷 이용에서 특정인이 보이는 행동 태양(態樣)처럼 거기에 다른 정보를 덧붙이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들도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박준석, 2013, pp. 2-3). 개인정보의 보호대상은 정보가 담겨 있는 유형물이 아니라 무형의 정보 그 자체가 권리의 객체라는 점에서 지적재산권과도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단편적인 정보 하나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결합가능성이란 결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접근·입수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합리적인 비용과 노력을 통해서 결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데이터 분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비식별 정보에 해당하던 것들을 식별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만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 사망한 자에 관한 정보도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뉴질랜드,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행정안전부, 2011, p. 6)만을 개인정보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이나 법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된다(행정안전부, 2011, p. 6).

개인정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성격, 내용, 형식 등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한 모든 종류, 모든 형태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이창범, 2012, p. 15). 어떤 사람의 주소, 생년월일, 출신학교, 연령, 신장, 체중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인물에 대한 제3자의 의견과 같은 주관적인 평가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정보가 사실로서 증명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특정한 개인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정보의 처리 형식이나 처리 매체에도 아무런 제한이나 제약이 없다. 문자·부호·그림·숫자·사진·그래픽·이미지·음성·음향·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처리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며, 바이너리 코드(binary code)를 이용해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와 비디오테이프에 저장된 자기(紫氣)정보는 물론이고, 손으로 기록된 수기(手記) 정보와 종이에 인쇄된 활자 정보도 포함된다(이창범, 2012, p. 15). <표 1>(Phil Jae Lee, 2014)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자연인의 내면적 사실, 신체나 재산상의 특징, 사회적 지위나 속성에 관하여 식별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총체를 일컫는다.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특정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

〈표 1〉 개인정보의 예시

구분		내용
일반 정보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이메일주소, ID/PW, 가족 관계 및 가족 구성원의 정보, IP주소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키, 몸무게
	의료/건강정보	•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정보	• 도서, 비디오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여행 등 활동내역, 식품품 등 물품 구매내역,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내역
	신념/사상정보	• 종교 및 활동내역, 정당,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재산적 정보	개인/금융정보	• 소득정보,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신용정보	• 개인 신용 평가정보, 대출 또는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법적정보	• 전과, 범죄 기록, 재판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근로정보	•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기타	통신정보	• 통화내역,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내역, 이메일이나 전화메시지
	위치정보	• IP주소, GPS등에 의한 개인위치 정보
	병역정보	•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화상정보	• CCTV를 통해 수집된 화상정보

2.3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인정보법 제2조 제3호).” 즉, 개인정보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 있는 사람,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행정안전부, 2012, p. 12)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여할 권리,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알린다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전달할 것인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권건보,

2014, p. 3)하는 것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권을 토대로 하고, 더 나아가서 열람청구권, 정정·삭제·차단청구권, 처리정지·파기청구권 등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권건보, 2014, p. 5).

정보주체의 구체적인 권리는 개인정보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다(제1호).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 목적과 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는 정보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지만, 그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의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개인정보법 제20조)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둘째, 동의와 동의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이다(제2호). 이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의의 내용과 범위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이창범, 2012, p. 63). 셋째, 개인정보의 처리 유무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가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보주체에게 보장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예방적인 기능을 염두에 둔 것이다. 넷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파기 요청권이다.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것인 경우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정정이나 삭제 더 나아가 파기까지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자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맞추어서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정보가 서비스 되고 있을 때, 그 정정을 요구하거나 정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박준석, 2013, p. 27).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의 처리로 피해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가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개인정보법 제39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제도(개인정보법 제6장), 단체소송제도(개인정보법 제7장) 등을 두고 있다.

정보주체의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는 신성불가침의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그 권리는 제한이 된다.

2.4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안전부, 2011, p. 72).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신용평가기관, 제휴회사 등 제3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인터넷,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인명록 등과 같은 공개된 소스로부터 수집할 수도 있다(이창범, 2012, p. 119). 본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에 대한 평판이나 에피소드 등을 수집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는 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마련된 규정,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목적인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만 그 구체적인 요건³⁾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동의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동意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에게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를 거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意的 내용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이 때 수집·이용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다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거나 포괄적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수집·이용 목적을 변질시키거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이창범, 2012, p. 122).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동의를 구분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행정안전부, 2011, p. 132).

정보주체에 대한 동意的는 정보가 수집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意的의 표시는 기명날인, 구두 승락,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意的란 클릭,

전자우편 발송 등 방법상의 제약은 없다. 동意的 획득의 구체적인 방법은 개인정보법 시행령 제17조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향후 입증을 위해서는 동意的의 내용은 어떤 형태로든 기록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의 다양한 항목들 가운데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다. 민감정보에는 개인의 사상과 신념, 노동조합이나 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해설서에 따르면, '사상·신념'이란 개인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 하는 믿음·생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을 말한다. '정치적 견해'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이다.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란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적법한 노동조합이나 정당일 필요는 없다.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이다(행정안전부, 2011, p. 141). 민감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意的와 구분해서 민감정보 각각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 수집과 이용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제23조).

3)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법률상의 공공기관이나 계약상의 요건 등을 다루고 있으나,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이 글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제1호의 내용만 다루었음.

2.5 개인정보법 적용의 예외

개인정보의 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리를 구현함으로써,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의 보호와 같은 또 다른 헌법적인 가치를 뒷받침하는 초석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면 헌법상의 이런 권리들을 오히려 위축시키거나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행정안전부, 2011, p. 351). 이런 까닭에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다른 헌법적인 가치들이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목적과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법 제58조는 그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법률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이 통계 목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제1항 제1호)이다. '통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의 각종 의사결정을 돕는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예외로 인정이 된다. 둘째,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제1항 제2호)이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이 요청되는 개인정보는 그 특성 상 비밀리에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1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공중

위생 등을 목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제1항 제3호)이다. 각종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 격리, 감염원의 추적 등의 활동과 천재지변·긴급재난 등으로부터 이재민을 구조·구호하기 위한 활동은 존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일이 정보주체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활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로 인정이 된다. 넷째, 언론기관, 종교단체, 정당 등에 대한 예외이다.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제1항 제4호)에 대해서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다. 그렇지만 고유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언론기관, 종교단체, 정당 등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언론기관의 인물DB 사업,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정당의 여성정치인 육성사업은 언론기관, 종교단체, 정당 등의 고유 목적이라 할 수 없는(행정안전부, 2011, pp. 352-353) 것이어서 그대로 개인정보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러한 네 가지 요건에 해당될 때 개인정보법 제3장부터 제7장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단체에 대한 적용 제외(제3항)이다.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업무적인 성격보다는

4)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를 적용하지 않는다. 친목단체의 경우에는 업무적 성격보다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친목단체의 설립목적을 벗어난 이용·제공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받는다(이창범, 2012, p. 401).

3. 구술자료와 개인정보

3.1 구술자료: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자료

구술자료는 어떤 인물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타인과 나누는 과정에서 기록으로 제작된 것이다. 그 안에는 구술자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두루 담겨 있기 마련이다. 출생과 성장에 얽힌 이야기,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에 관한 이야기,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버린 어떤 사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담겨 있다. 구술자료는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와 맥락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구술자료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삶의 숨결과 궤적을 오롯이 품고 있는 살아 있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의 대부분은 사회 구성원들과 쉽사리 공유할 수 있고, 또 그럴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가 무척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서 구술자를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는 이야기, 개인의 성적(性的) 취향이나 연애담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기 곤란한 지극히 내밀한 이야기가 포함되기도 한다. 어찌보면 구술자료는 연구나 수집의 대상이 되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인생살이의 다양한 국면을 입체적으로 담고 있는 사람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과정은 상당히 섬세하고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구술사학회는 구술자료의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출범 초기부터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과정에 필요한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대비해왔다. <표 2>(출처: <http://www.koha2009.or.kr>)는 한국구술사학회가 지난 2010년에 공표한 연구윤리규정 가운데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구술자료 생산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구술자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조 속에서 구술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구술자료의 활용에 앞서서 구술자와 연구자의 사전 검토는 필수적이며, 일단 구술이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개와 활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구술자에게 주어서 구술자의 인격적인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구술사 연구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구술자와 제3자의 인

〈표 2〉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연구〉 연구윤리규정

<p>제4조 (구술채록작업에 관한 윤리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자는 구술채록의 목적과 해당 구술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구자는 구술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구술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자는 구술자가 구술된 내용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건부 혹은 익명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연구자는 구술자가 구술된 내용에 대한 모든 형태의 활용과 보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구술채록은 구술자와 사전에 동의한 내용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동의는 기록되어야 한다. 6. 연구자는 구술된 내용을 기록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구술채록의 상황을 포함해서 구술채록의 준비과정과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p>제5조 (구술자료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윤리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형태의 구술된 내용은 구술자가 사용을 허락할 때까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구술된 내용의 녹취문은 가능한 한 구술자와 함께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3. 연구자는 구술된 내용을 원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전시회 및 출판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 구술자료를 재현할 때에는 구술사프로젝트의 지원기관을 밝혀야 한다. 5. 구술자료의 이용자는 구술자료의 생산자(구술자와 연구자)를 밝혀야 한다.

격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모두 이처럼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구술사학계가 이렇게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과정에서 윤리적인 기준을 강조하는 것은 구술사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술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진실에 접근하려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인류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다른 학문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에서는 제보자나 연구참여자는 익명으로 처리되거나 비밀에 부쳐지고,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도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는 모두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구술사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수집 자체가 중요한 연구 목적에 해당하고, 연구 결과의 영구적인 보존과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 연구와는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 또한 사료로서, 기록으로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술자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도 다른 질적 연구와는 상이한 부분이다. 익명이나 비밀 속에 이야기한 사람을 감추는 다른 질적 연구들과는 달리 구술사는 구술된 내용에 대한 모든 형태의 활용과 보급에 대한 권한을 구술자가 가지도록 하고, 구술자가 공개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동의의 내용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록(Christian Joon Park, 2016, p. 142)하도록 함으로써 구술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초기 구술자료의 서비스는 텍스트와 녹음된 목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고, 이런 까닭에 구술자를 위협에 빠뜨리거나 구술자에게 해악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리라고 여겨졌다(Christian Joon Park, 2016, p. 138).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구술현장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고, 수집된 자료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곳도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구술자료의 공개가 구술자를 위협에 빠뜨리거나 구술자에게 해악이 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오프라인 상에서 음성과 텍스트만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그 파장의 범위나 영향력이 엄청나다. 영상자료는 구술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과 세세한 몸짓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구술자의 신원 노출은 불가피하다. 이 때 구술자의 인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구술사학과 아카이브즈들은 이렇게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따르는 인격권의 보호를 위해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시도는 사람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자료의 원천이 되고, '인간의 참여와 협력(Chrisian Joon Park, 2016)'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술사 연구와 구술자료의 고유한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 기술 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법·제도적인 환경의 변화는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구술자료에도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구술사 연구와 자료 수집과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구술자료에 개인정보법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해보려고 한다.

3.2 구술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구술자료는 구술자의 육성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사건에 대한 경험과 해석,

삶의 여러 국면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익명성 속에 정체성을 감춘 누군가가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기획의도에 따라서 엄선된 실명의 구술자가 자신이 처한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과 해석을 스스로의 관점에서,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풀어내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구술사학자 Linda Shopes(2007)는 익명성은 구술사의 근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사료로서, 증거로서 구술자료의 신뢰성을 결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구술자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술자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구술자료에는 이름, 출생과 성장, 교육적인 배경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구술자의 생생한 육성과 얼굴과 같은 신체적인 정보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구술자 자신의 기호와 성향에 대한 정보, 신념이나 사상에 관한 정보 등 개인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다양한 정보들이 함께 포함이 된다.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면, 구술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술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법이 정의하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임에 틀림이 없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법이 정의하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구술자료가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의 세세한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구술을 통해서 어떤 항목의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를 구술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사상, 신념, 노

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과 같은 민감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각각의 항목마다 구술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쳐서 구술자료가 수집되어야 적법한 요건을 갖추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요구 사항들은 구술자료의 생산 과정과 그 내재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구술자료의 생산과 활용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구술자료는 구술자와 채록자의 대화를 바탕으로 수집·제작되는 것으로, 구술자와 채록자의 라포 형성의 정도나 채록 당시의 분위기·흐름에 따라서 생산되는 자료의 폭과 깊이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구술자료의 수집 과정은 사전에 약속된 특정한 항목에 대한 표면적인 사실들을 수집하는 기계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구술자와 채록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고 형성해 나가는 매우 탄력적인 공동 창작의 과정이다. 구술자료의 수집 과정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개인의 삶에 남긴 내면적인 흔적을 탐사하는 과정이고, 구술자와 채록자의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해결점을 발견해나가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구술 작업의 시작에 앞서서 어떤 항목의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를 특정하기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대한 사전 고지와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개인정보법을 준수하면서 구술자료를 수집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더구나 구술 내용의 상당 부분은 개인정보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민감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불가피하게 민감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집하는 각각의 사항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규정은 구술자료를 통한 내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의 수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개인정보법에서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민감정보에는 구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구술자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맥락과 시대적·사회적 상황들이 담겨 있다. 민감정보를 수집대상에서 배제한다면, 구술의 필요성 자체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구술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집하는 민감정보들에 대해서 사전동의, 그것도 각각의 항목마다 개별적인 동의를 구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얻기란 실제로 불가능하다.

3.3 구술자료에 포함된 타인에 대한 이야기

한편 구술자료에는 구술자 본인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술자가 살아오면서 함께 만나고, 생활했던 많은 제3자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제3자에 관한 이야기는 친구와의 사적인 만남에서부터 공적인 활동에서 만났던 관련자의 행적이나 평판, 평가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다. 구술자료 가운데에는 남겨진 자료가 거의 없는 유명인사의 행적이 포함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 유명인사에 대한 자료 수집 자체를 목적으로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구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구술의 과정에서 언급되는 제3자에 관한 이야기는 구술자의 특정한 사람에 대한 단순한 친소관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문헌자료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정보인 경우도 비밀비재하다.

그런데 구술자료에서 언급되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도 개인정보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다.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2005.5.26.선고 2004헌마190결정)”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제3자에 관한 언급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활용하는 모든 행위가 개인정보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이 개인적인 것인지, 공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개인정보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법 제58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이 될 수 있다. 이야기의 대상이 살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언론 보도를 제외⁵⁾한 타인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적인 활동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면, 구술자료에 담긴 제3자에 관한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실존하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관련된 자료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모든 영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를 모두 개인정보로 규율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구술자료의 수

집과 활용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문화와 학술 영역에 전반에 걸친 것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온라인상에 자료를 공개하는 행위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개의 방법이나 매체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 있는 개인을 제3자적인 관점에서 비평, 연구, 출판하는 행위는 모두 개인정보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구술아카이브즈가 제3자에 관한 이야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 정보를 누구에게서 얻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제3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해진다. 구술에 포함된 제3자에 관한 언급은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을 두루 포함하는 것이어서 이들 모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설령 허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편의 구술자료에 언급되는 생존하고 있는 제3자의 수를 가늠할 수도 없고, 이들 모두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기란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량의 구술자료에 대한 서비스를 전제로 하는 구술사아카이브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수용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5) 국가기관이나 계약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구술자료와 무관하며, 정당의 입후보자 추천, 종교단체의 선교 목적 등과 관련 없고, 구술자료의 활용과 가장 맥락이 닿는 부분은 언론의 보도를 위한 활용이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표기하였음.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제3자에 대한 이야기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면, 구술자료의 안정성과 진본성의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법 제4조 제4호)를 보장하고 있다.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제3자가 개인정보법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이미 생산이 완료된 구술자료의 서비스 정지를 요청하거나, 구술자료의 내용을 정정 심지어 삭제·파기를 요청할 경우에 정보처리자로서 구술사아카이브는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권리가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변화에 대한 요구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술사아카이브는 구술자료에 포함된 제3자에 관한 이야기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고, 오류에 대한 정정과 삭제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구술자료의 기록으로서의 진본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법은 사라지게 된다. 구술자료 가운데 설령 제3자에 대한 잘못된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왜곡이나 변형된 기억 그 자체는 구술자료의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기억의 왜곡과 변형은 구술자의 해당 인물에 대한 해석이고, 평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온전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불완전한 기억은 그런 오류를 낳게 된 맥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구술자료만의 고유한 내재적인 가치이다. 그래서 구술자료를 구술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록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그것은 구술자료에 담긴 맥락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작업이고, 기록으로

서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진본성에 관한 문제이다. 정보주체에 의한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에 대한 요구는, 특히 제3자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는 구술자료의 내적인 가치와 기록으로서의 진본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구술자료에서 언급되는 제3자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도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권한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구술자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 원리이다. 그렇지만 제3자의 인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불가능해지고, 연구의 주제로 다룰 수 없고, 아카이브에서 원본 그대로의 자료를 보유하거나 서비스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3자에 관한 이야기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근거 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구술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하고, 적절한 보호 장치의 마련이 전제가 된다면 원본 그대로 그 자료를 보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생존 인물이라는 이유로 그가 공적으로 벌인 활동을 비밀리에 부치고, 정당한 평가를 막아야 할 어떤 근거나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학문과 출판의 자유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위헌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3.4 구술자료의 열람 제공과 온라인 서비스

구술자료는 대개 구술사아카이브즈의 열람

이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유와 활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술자료의 열람과 온라인서비스의 제공은 기술자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거쳐서 그 내용과 범위가 결정된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자료에 대한 열람과 온라인서비스는 모두 기술자의 동의와 기술자료에 대한 사전검토와 승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술자료가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면, 기술아카이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자료를 열람이나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은 언뜻 보아서 개인정보법 제17조가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지침’ 제8조 제1항)”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제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제공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의 공개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창범, 2012, p. 143; 이창범, 이성범, 2014, p. 214)도 있다. 제공은 받을 사람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공이 아니라 공개에 해당한다(이창범, 2012, p. 143)는 주장이다. 기술아카이브

의 자료 열람이나 온라인서비스는 불특정 다수가 필요한 때에 기술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에 지나지 않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해당 자료를 이용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자료의 서비스를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술아카이브의 열람서비스를 개인정보의 제공이라고 본다면, 자료 열람과 온라인서비스는 법 제1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루어져야만 한다.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술자료의 열람과 온라인 제공에 앞서 기술자의 검토와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제2항의 요건을 갖추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해당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함께 부가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아카이브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인다. 개인정보 이용자,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용의 목적, 보유기간을 특정해서, 기술자에게 동의를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개인정보 이

용자를 특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등을 특정하기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구술자료의 열람 제공과 온라인 서비스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인지 개인정보의 공개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구술자료는 기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다. 구술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구술자료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즉 개인정보파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구술자료는 정보처리를 위해서 무작위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도 아니고, 학술적인 혹은 문화적인 의도와 맥락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이다. 구술자료의 열람 제공과 온라인서비스는 출판을 통해서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이다. 구술자료의 서비스 제공에 앞서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항목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는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만큼 보유하도록 하겠다는 단서를 가지고 구술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출판물을 발간하면서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동안 출판물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가지고 저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 이러한 요건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요구이다. 구술자료의 생산과 활용이 가진 문화적인, 학술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구술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학문과 출판의 자

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비단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서만 아니라 출판, 학문, 예술 활동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개인정보가 표현의 자유, 학문과 출판의 자유에 미칠 파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4. 대응방안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독특한 자료이다. 그 안에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세월을 함께 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 구술자료의 이런 고유한 특성은 그 수집과 서비스의 과정이 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윤리적인 기준 아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는 특정한 인물에 대한 과편화된 데이터를 무작위로 모으고, 관리하는 과정과는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는 철저하게 학술적인,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구술자나 구술에 등장하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보호도 마찬가지로 맥락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구술자료에 개인정보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술자료의 학술적인, 문화적인 맥락을 말살시키는 것이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지금부터는 개인정보법의 도전에 대한 구술사학계와 구술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개인정보법의 제58조

제4호의 개정이다. 개인정보법 제58조는 개인정보법 적용에 대한 공익적인 관점에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4호에서는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고유한 목적인 취재와 보도, 선거, 선거입후보자 추천 등을 위해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법 제3장부터 제7장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일환(2014)은 과학기술연구·학문연구·역사적 기술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 적용의 일부 면제를 규정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이 조항의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해외의 입법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에 대한 예외는 지나치게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표 3>(Phil Jae Lee, 2014)은 개인정보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입법례이다. EU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보도 목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활동이나 표현을 위한 경우를 폭넓게 예외에 포함시켜서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문학이나 예술의 표현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독일, 일본, 영국의 경우도 언론이나 학문, 예술의 목적인 경우를 개인정보법의 적용 예외에 포함시켜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법에서는 예외로 인정되는 범위가 보도, 선거, 선거후보자의 추천 등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다. 개인정보법의 적용 범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두루 망라하는 것이어서, 개인정보법의 경직된 적용은 자칫하면 학문과 출판

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개인정보의 공개가 정보주체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경우가 아니고,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큰 공익적인 취지를 갖춘 경우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이를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박준석, 2013).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집합물이 아닌 개인정보와 집합물인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취급은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집합물이 아닌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경우를 현재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주장(박준석, 2013, pp. 14-15)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도, 학술, 연구, 의료, 보건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범을 마치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과 같은 규범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학문 연구나 예술 등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학문적인 목적, 출판의 목적 등을 위한 경우에 개인정보법에 대한 폭넓게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가 표현의 자유, 학문과 출판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법률 개정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개인정보법의 도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위한 운동과 병행해서 기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의 과정에서의 자율적인 규제를 정착시키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

〈표 3〉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예외 사례

구분	내용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 국가주권, 국가안보,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위한 경우
EU 『개인정보보호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하게 사적이고 가사목적의 활동을 위한 경우 • 공공의 안전, 방위,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의 경우 • 형사법 영역의 국가활동(수사 등) • 보도 목적, 문학적·예술적 창작활동이나 표현을 위한 경우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수집, 생산, 이용이 오직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활동 영역에 속하는 경우(제3조 제3항) • 법률의 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공공복리 및 공공안전침해 방지, 형상상·행정상 집행을 위한 경우(제14조 제2항) • 계약목적, 정보주체의 중요한 법적 이익, 광고·시장조사·여론조사, 학문연구, 과학적 연구(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고, 기타 방법이 없는 경우), 제3자의 법적 이익 또는 공익보호, 정치·철학·종교 또는 노동조합 목적(제28조)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목적(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보도기관) • 저술 활동 목적(저술을 업으로 하는 자) • 학술 연구 목적(대학 기타 학술연구단체, 기관 및 구성원) • 종교활동 목적(종교단체) • 정치활동 목적(정치단체)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와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가정적 목적, 언론·예술·문학적 목적(제4조 제2항) • 법률 위반조사, 개인의 생명·건강·안전보호, 통계·학술조사,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규정에서 정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제7조 제2항) • 법정 변호사 및 사무 변호사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부채회수의 목적, 법원의 필요, 법적 권한 있는 정부기관의 요청(제7조 제3항)
영국 『정보보호법』 (제28조~제36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한 사적 목적(개인 자신, 가족, 가사 등)을 위한 경우 •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 범죄 방지·수사·검거 및 조세와 관련된 활동의 경우 • 다른 법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공익을 위한 감시기관(공정거래 등)의 규제활동목적 • 언론·예술·문학적 활동 목적의 경우 • 연구·역사·통계 목적의 활동인 경우 • 법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정보인 경우 • 군대, 법률소송, 법관 임명 및 훈장 수여 등

술자료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학술적·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규범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의료생명과학 윤리 보호를 위해서 인간대상

연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던 IRB의 규제에 대한 미국 구술사학회의 대응은 개인정보보호와 유사한 사례로써 참고할 필요가 있다.⁶⁾ 미국의 IRB는 인간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및 행동연구에서 피실험자의 권리

6)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Christian Joon Park(2016)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와 복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미국 보건복지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구술사 연구도 IRB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렇지만 IRB가 보호하려고 하는 인간연구대상의 권리나 이해관계와 존엄성은 생명과학과 행동과학 관점에서 정의된 것으로 인문학적 연구와는 배치되는 요소가 있었고, 구술사 연구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갈등 끝에 최근에 미국 보건복지부는 구술사를 IRB의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되도록 인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예외를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구술사학이 이미 자체적으로 연구윤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 평가되었기 때문(Christian Joon Park, 2016)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생명과학이나 행동과학의 기준을 인문학적인 특성이 강한 구술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까닭이다. 이런 미국의 사례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법이라는 일률적인 잣대의 기계적인 적용에 대한 예외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의 정신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그 세부적인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고유한 자체 규범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행히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구술사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연구윤리규정은 구술사학계의 연구를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아카이브즈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 구술자료의 수집이 고지된 동의를, 자료의 공개가 구술자의 사전 검토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윤리규정은 개인정

보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의 인격에 대한 보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구술사학계에서는 제3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술사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는 제3자의 보호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Alan Ward는 영국구술사협회의 홈페이지(<http://www.oralhistory.org.uk>)에서 구술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구술사 인터뷰와 연구는 개인정보법(Data Protection Act)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구술자료의 출판이나 배포에 앞서서 언급된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해도 좋은 지에 대해서는 구술자로부터 분명한 허락을 받는 편이 좋다고 권고한다. 제3자에 대한 언급은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구술자의 사전 확인을 자료 공개에 선행하는 필수적인 프로세스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구술자료의 공개가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을 구술자에게 미리 알려서, 구술자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아울러 구술의 공개가 가지는 책임을 각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구술사학자이자 법률가인 Neuenschwander (2009)는 구술자료의 공개에 앞서서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생사 여부 확인, 구술자료를 읽고 난 이후 대상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의 변화 여부, 특정한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구술자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의 확보 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구술자료를 전면비공개, 해당 부분 삭제 후 공개, 편집, 삭제 등의 등급을 부여하여 공개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다. 이호신(2012)은 제3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술의 내용을 독일의 인격영역론의 구분에 따라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 영역은 가능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고, 사회적 영역이나 공개적 영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제안이다. 이런 제안들은 구술자료의 공개가 개인정보법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윤리적, 법적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보다 섬세한 기준에 입각해서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구술사학과 아카이브즈는 구술자료의 공개에 앞서서 구술자료에 포함된 제3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와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규범을 마련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규범에는 구술자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아카이브즈의 공개 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프로세스가 포함되어야 하고, 아울러 구술의 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료의 공개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등급 등을 함께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술연구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법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법률 개정에 앞서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보완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입증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

해 구술자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인 명분과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구술사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개정과 보완, 그리고 구술아카이브즈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술자료 수집과 서비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5. 닫는 말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살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구술자료에는 구술자 자신과 그가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다. 따라서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는 개인정보법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구술자료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상당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구술자료가 가지고 있는 학술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온전하게 고려하지 않고서 기계적으로 개인정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할 수 없는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 또한 구술자료에 내재한 고유한 가치와 그 진본성을 훼손할 위험마저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학

문과 출판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단지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학문과 예술 전반으로 확대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법 관련 조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그 적용의 범위를 기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다. 더구나 적용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서 구술자료와 같은 정상적인 학술행위의 결과물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은 예술이나 학문 활동과 관련

된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폭넓게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만 한다.

한편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구술자와 제3자의 인격을 자율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구술자료가 가지는 고유한 맥락을 온전하게 고려한 자체적인 윤리 기준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윤리기준에는 구술자료를 공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프로세스와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술자료는 파편화된 데이터들을 모아 놓은 단순한 자료의 더미가 아니라 구술자가 살아온 삶의 자취와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람 그 자체이고, 사람에 대한 보호보다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권건보 (2014).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고학수 (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pp. 3-35). 서울: 박영사.
- 김일환 (2014).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의 합리화 방안: 법 제58조의 입법론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43(1), 31-54.
- 박준석 (2013).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정보법학, 17(3), 1-40.
- 오유석 (2010). 구술사 연구 윤리의 정립과 주요 쟁점. 한국구술사학회, 한양대동시아문화네트워크연구단, 2010년 동계 구술사 워크숍: 구술사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연구윤리, 28-38.
- 이양호 (2010). 구술채록 윤리강령을 위한 비완결적 제언. 2010년 동계 구술사 워크숍: 구술사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연구윤리, 39-43.
- 이창범 (2012). 개인정보 보호법. 서울: 법문사.
- 이필재 (2014).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의 체계 문제. 한국위기관리논집, 10(1), 81-103.
- 이호신 (2010). 구술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구술사연구, 1(1), 49-75.
- 이호신 (2012). 구술자료의 인격적인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47-69.

- 이희영 (2010). 구술사 연구 윤리에 대한 제언: 과학 연구와 삶의 긴장. 2010년 동계 구술사 워크숍: 구술사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연구윤리, 44-45.
- 행정안전부 (2011).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서울: 행정안전부.
- Christian Joon Park (2016). IRB와 구술사 연구 윤리: 한민족다문화 협력적 구술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7(2), 133-161.
- Neuenschwander, John A. (2009). A Guide to Oral History and Law. New York: Oxford Press.
- Shopes, Linda (2007). Negotiating Institutional Review Board. AHA Perspectives Online, 45, 3
Retrieved January 19, 2017, from
<https://www.historians.org/publications-and-directories/perspectives-on-history/march-2007/institutional-review-boards>
- Ward, Alan. Is your oral history legal and ethical? Retrieved January 7, 2017, from
<http://concernedhistorians.org>

[법령 및 판례 등]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76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
헌재 2005.5.26. 선고. 99헌마513 결정
헌재 2005.5.26. 선고. 2004헌마190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Il Hwan (2014). Streamlining Plan of Object of Applic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cus on the Legislation Theory of Article 58. Public Law, 43(1), 31-54.
- Kwon, Geon Bo (2014). The right of self-control of Information Subject. Ko, Hak Soo Edit. Law and Polic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 (pp. 3-35). Seoul: Bakyounsa.
- Lee, Chang Bum (201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eoul: Beobmunsa.
- Lee, Hee Young (2010). A Propose on Oral History Research Ethics. Korean Oral History Association (2010) Winter Workshop on Oral History: Oral History Institution Network and Research Ethics, 44-45.

- Lee, Hosin (2010). A Study on Copyright Issues for Oral History Interviews.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1(1), 49-75.
- Lee, Hosin (2012). A Study on the Issues on Maral Rights of Oral History Resour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3), 47-69.
- Lee, Phil Jae (2014).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Related Laws.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0(1), 81-103.
- Lee, Yang Ho (2010). Non-Completion Recommendations for the Oral History Code of Ethics. *Korean Oral History Association*. 2010 Winter Workshop on Oral History: Oral History Institution Network and Research Ethics, 39-43.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201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Guidelines and Notices*. Seoul: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 Oh, Yoo Seok (2010). Establishment and Major Issues of Oral History Research Ethics. *Korean Oral History Association*. 2010 Winter Workshop on Oral History: Oral History Institution Network and Research Ethics, 28-38.
- Park, Christian Joon (2016). IRB and Oral History Research Ethics: Focusing on the Collaborative Oral Life History of Hanminjokdamunhwa.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7(2), 133-161.
- Park, Jun-seok (2013).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media Law*, 17(3), 1-40.